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0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김승원 · 민병덕 · 김남근
임호선 · 허 영 · 권칠승
이재관 · 이인영 · 서삼석
박수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설립 후 등기사항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이후 활동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감독 등을 이유로 최근의 사항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감독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해당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0 제7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10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감독,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49조의21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49조의10제4항·제6항”을 각각 “제249조의10제4항·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446조제43호 중 “제249조의10제4항·제6항”을 “제249조의10제4항·제6항·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의 감독, 그 밖 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u>
⑦ (생 략)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 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249조의10제4항 · 제6항 또 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249조의10제4항 · 제6 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 ----- ----- ----- ----- 1. 제249조의10제4항 · 제6항 · <u>제7항</u> ----- ----- ----- 2. ----- ----제249조의10제4항 · 제6항 <u>· 제7항</u> ----- -----

경우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6조(벌칙) -----

	-----.
1. ~ 42. (생략)	1. ~ 42. (현행과 같음)
43. <u>제249조의10제4항·제6항</u>	43. <u>제249조의10제4항·제6항·</u>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u>제7항</u> -----

44. ~ 64. (생략)	44. ~ 64. (현행과 같음)